



통상 News Brief

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SHIN & KIM International Trade Law Center

2021-3호

Contents

동향분석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정책방향	03
--	----

이슈진단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안	07
----------------------------------	----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과 국제통상법적 의의	10
---	----

연설문 미국의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	14
--------------------------------	----

2분기 주요 통상뉴스	21
-----------------------	----



동향분석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정책방향¹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2019년 기준 전세계 총생산(GDP)의 4.5% 내지 15.5%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이미 전체의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유통·서비스 업은 물론, 교육, 의료, 금융, 교통,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면도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결과 개인정보 침해도 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유럽연합(EU)에서만 89,000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 2019년 조사결과 EU 시민의 44%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때문에 개인 인터넷 사용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의 81%는 디지털 경제의 이익보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¹ 본고는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디지털 경제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라는 제목으로 2021.06.22.자 중앙일보에 실린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개인정보 불법 사용, 서비스 내용의 비윤리성 내지 반사회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출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 불법 수집, 희롱·혐오 발언 논란으로 서비스 시작 2주만에 문을 닫은 것이 그런 예다. 해외에서는 2015년 아마존의 채용 전문 AI가 남성 선호 문제로, 구글의 AI 기반 포토 서비스는 흑인을 고릴라로 태깅하는 인종차별 논란으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는 욕설과 인종차별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캠브리지아날리티카 스캔들은 인공지능이 정치의 영역에까지 손을 뻗친 사례다. 이 회사는 8,700만건의 유권자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그들의 심리성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했다. 2015년과 2016년에 미국 대통령후보 선거와 2016년 영국 브렉시트 지지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그것이 인간의 삶의 전 영역과 직결되어 있다는 데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정보 등 인격권의 일부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디지털경제는 단순 경제논리로 바라볼 수 없다. 디지털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서비스가 인간성과 충돌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복지에 기여한다는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의 자율 학습 능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미 AI를 통한 자동화된 의사결정(autonomous decision)이 직원의 채용 및 평가, 개인의 신용평가 등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EU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사업자의 활용 고지의무, 이용자의 이용 거부 및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 권을 인정했고, 일부 국제협정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도입됐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학계와 기업과 시민단체의 자문을 거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제 구속력 없는 윤리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개인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을 보호할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합리적인 규칙도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에서 창출되는 미래가치의 60-70%를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과점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승자독식’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커졌다. 시장에 대한 과잉규제는 지양하면서 중소기업자들이 공정한 조건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불법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과제다. EU가 공표한 디지털시장법안은 적용대상 업체의 기준을 크게 높여 아직 성장하는 중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규제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이야 한다. 디지털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 EU 등 주요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나 기타 정당한 법적 근거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만능키처럼 사용하는 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모르는 개인들은 자기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처리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디지털 업체가 상세한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알려 준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개인은 많지 않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개인의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고 보는 현행 제도는 재검토를 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한 근거로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방식은 조만간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수집되어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큰 문제다. 최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받은 정보

수령자나 혹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의 실효성이다.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실행 가능한 사법적 구제수단이 확보되는지도 중요하다.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을 무효화시킨 슈렘스(Schrems)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소송은 페이스북(Facebook)을 상대로 한 것이었지만 결국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음으로, 상호 조화되지 않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체계는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각국의 디지털 규제체계는 천차만별이다.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국제규범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많은 국가가 자국에서 생산된 모든 데이터 혹은 중요한 데이터를 자국내 서버에 보관하도록 하는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미중 디커플링이 디지털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주요 7개국(G7) 국가들은 ‘신뢰에 입각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을 주창하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서 국가간에 심각한 상호불신 내지 시각차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런 분열적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디지털 통상협상 등 국제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간 디지털 규제체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국제규범에서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대한 규제의 한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관련하여 국제규범에서는 소위 ‘정당한 공공정책목표’(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에 의한 규제는 허용하면서도 무엇이 정당한 공공정책목표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규제사유와 규제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규범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인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 간 혹은 정책 간 충돌을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도 있다. 디지털 경제의 특성상 정부 부처 간 관할이 애매하거나 중첩되는 경우도 많고, 자칫하면 규제의 경쟁으로 치닫기 쉽기 때문이다.

이슈진단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안

2019년 12월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14일 EU 집행위는 CBAM 최종규정안을 발표하였다.¹ CBAM 규정안은 11개 챕터 36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5개의 부속서(Annex)로 이루어져 있다.

EU CBAM안에 따르면 EU역외국가로부터 적용대상 물품 (전력 포함)을 수입하는 EU 수입자는 각 회원국별로 지정된 담당기관으로부터 CBAM 확인서(Certificate)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EU역외 생산자가 자국에서 해당 수입품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만큼 CBAM 확인서 구매의무가 면제된다. CBAM 확인서 가격은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에서 결정된 배출권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1. CBAM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EU의 CBAM은 일단 탄소배출이 많은 전기, 철강(iron, steel),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Annex I).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경과기간(Transitional phase)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EU수입자들은 수입물품에 대한 '내재된 탄소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보고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CBAM 확인서 구매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과기간 종료 전까지 EU집행위는 상기 5개 분야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 분야로 CBAM을 확대 적용할지, 적용대상 물품의 생산

¹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carbon_border_adjustment_mechanism_0.pdf

과정에서 ‘직접 배출(direct emissions)’되는 탄소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의 가치사슬이나 소위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s)’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과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CBAM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CBAM을 EU ETS와 상호 선택적 내지 보완적으로 운용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 EU역내 생산자들에 대한 배출권 무상할당(free allowances)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35년에는 무상할당을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그 때까지는 무상할당이 줄어드는 것에 비례하여 CBAM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EU 역내 생산자들과 수입자들 간에 형평을 기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CBAM은 EU ETS에 참여하고 있는 EFTA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력의 경우, EU의 전력시장에 통합되어 EU의 전력시장규정의 주요 조항을 도입하고 2050년까지 기후중립 로드맵 등을 제시하는 국가는 CBAM 적용예외국가(Annex II, Section B)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rticle 2).

2. 운영방식

CBAM은 적용대상 물품의 수입시, EU 수입업자들이 CBAM 확인서(CBAM certificates)를 구매하도록 하고 수출국에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따른 배출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CBAM 확인서는 국가별로 지정된 책임당국(competent authority)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공인된 신고인(authorized declarant)에게 판매하게 된다. 적용대상 수입물품에 내재된 탄소배출(embedded emissions)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즉 배출된 CO2 톤당 한 개의 CBAM 확인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가격은 EU ETS에서 결정된 배출권거래 가격이 적용되며, 매주 영업일 기준 첫째날에 그 주의 평균 가격이 공표된다(Article 21). 2021년 5월 기준, EU의 탄소가격은 50유로(한화 6만 8천원 수준)수준이며, 2030년에는 90유로까지 상승할 전망이다.²

²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u-carbon-price-tops-50-euros-first-time-2021-05-04/>

공인된 신고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년도에 수입한 물품량, 그 물품에 내재된 총 탄소배출량(물품은 톤당 배출된 CO2톤, 전기는 메가와트당 배출된 CO2톤), 그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한 CBAM 확인서 숫자(원산지국에서 지출한 탄소비용을 차감한 것)를 신고(declaration)하여야 한다(Article 6). 신고인은 CBAM신고시 공인된 검증기관(accredited verifier)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Article 8). 검증원칙과 내용은 부속서 V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 CBAM 운영에 있어 핵심 이슈는 수입물품(전기 포함)에 내재된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 할 수 있다. CBAM 규정안에 따르면 수입 물품에 내재된 배출량은 실제 배출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실제 배출량을 산출할 수 없을 때는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입 전기의 내재 배출량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기본값을 우선 적용하고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실제 배출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Article 7). CBAM 규정은 내재된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부속서 III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집행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물품의 내재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배출과 관련하여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 배출된 CO2톤당 최대 100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Article 26), CBAM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약간 수정된 물품(slightly modified products)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CBAM 규정을 회피(circumvention)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도 CBAM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Article 27), CBAM에 대한 실효적 집행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슈진단

EU 역외보조금 법안의 주요 내용과 국제통상법적 의의

2021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시장에서의 경쟁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역외보조금 규제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2020년 6월 EU가 발간한 역외 보조금 백서(White Paper)에서 지적된 바대로, EU역외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인해 EU 역내시장의 경쟁 왜곡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백서에서는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국제적 차원의 규범 마련보다는 EU 차원의 입법조치를 진행할 것에 무게가 실렸다. 이후 2020년 11월 EU 집행위에서는 역외보조금 규제와 관련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고, 2021년 5월 EU 집행위에서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이 발표되었다.

1. 구성 및 주요 내용

동 법안은 총 7개의 장(Chapter) 4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역외보조금에 대한 직권 검토(ex officio review)와 사전적 검토(ex ante review)-M&A 및 공공조달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선, 제2조에서는 역외 보조금(foreign subsidy)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역외 보조금은 EU 역외국가의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주어지는 재정적 기여로 EU역

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제한된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¹ 여기서 재정적 기여는 EU 역외 정부가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정부의 행위로 귀속(attributed)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공공기관(public entities), 민간기관(private entity)이 제공하는 재정적 기여도 포함된다.

특기할 만한 점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행위가 정부의 행위로 귀속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성격(characteristics of the entity)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비롯한 법적 경제적 환경 (legal and economic environment prevailing in the State in which the entity operates including the government's role in the economy) 과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WTO 상소기구가 WTO 보조금협정상 공공기관(public body)을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보아 중국의 많은 국영기업을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해온 온 태도를 배격하고 중국 국영기업의 재정적 기여를 정부의 행위로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제3조에서는 역외보조금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3년간 5백만 유로(한화 약 67억 수준) 미만의 역외보조금은 시장왜곡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역외보조금에 대한 사전조사(ex ante)가 이루어지는 기업결합(concentrations) 심사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¹ **Article 2 Existence of a foreign subsidy**

- (1) For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a foreign subsidy shall be deemed to exist where a third country provides a financial contribution which confers a benefit to an undertaking engaging in an economic activity in the internal market and which is limited, in law or in fact, to an individual undertaking or industry or to several undertakings or industries.
- (2) For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 (a) a financial contribution shall include:
 - (i) the transfer of funds or liabilities, such as capital injections, grants, loans, loan guarantees, fiscal incentives, setting off of operating losses, compensation for financial burdens imposed by public authorities, debt forgiveness, debt to equity swaps or rescheduling;
 - (ii) the foregoing of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 or
 - (iii)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r the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 (b) the financial contribution provided by the third country shall include the financial contribution provided by:
 - (i) the central government and government authorities at all other levels;
 - (ii) foreign public entities, whose actions can be attributed to the third country, taking into account element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tity, the legal and economic environment prevailing in the State in which the entity operates including the government's role in the economy; or
 - (iii) any private entity whose actions can be attributed to the third country, taking into account all relevant circumstances.

기업결합 심사에 대하여는 결합기업들의 매출액 합계액이 5억 유로를 초과하고 역외 재정적 기여금이 최근 3년간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해당 기업이 역외보조금 수령 여부를 EU 집행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제19조), 이를 EU 집행위가 심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업결합 이행이 금지된다(제23조). 결합기업들이 이러한 통지나 심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장왜곡 보조금으로 인정될 경우 조건부 승인 또는 기업결합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제25조). 공공조달 참여의 경우도 기업결합 심사와 유사하다. 공공조달 가액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입찰 참여기업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내역을 계약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당국은 이를 EU 집행위에 전달해야 한다(제28조). 입찰 참여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제32조), 보조금 수령으로 인해 저가 입찰 등 부당한 혜택을 누린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제2장에서는 역외 보조금에 대한 직권조사(ex officio)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직권조사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역외 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직권조사 결과, 시장왜곡 보조금으로 판정된 경우, 보조금 수혜기업은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에 이를 반환해야 하며, EU집행위는 투자제한, 자산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 수혜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5%이내, 일일 평균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제15조).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법안은 EU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걸쳐 입안될 예정으로 통상적으로 이러한 절차에는 2~3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 국제통상법적 의의

EU의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은 보조금이 국제통상법 체제에서 뿐 아니라 국내법적 차원에서도 규제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은 WTO 보조금 협정 등 국제통상법 규범하에서 보조금 이슈를 제기해 왔으며, 각국의 국내법으로 운용되는 상계관세 규정도 WTO 보조금협정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만약 EU의 동 법안이 채택된다면 수입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상계관세절차가 아닌, 기업결합심사나 정부조달,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자산처분 명령, 과징금 부과 등과 같이 수혜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국내법적 조치가 시행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은 WTO 보조금협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규제방식으로서, 동 보조금협정이나 GATT나 GATS의 비차별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통상규범을 통해 중국의 산업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조치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CPTPP상의 ‘국영기업’ 챕터의 도입이라든가 미국의 강화된 기업결합 심사규정² 등이 등장하는 맥락에서 EU의 역외 보조금 규제법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U는 국내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WTO 등 다자적 맥락에서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규범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³ 이번 EU의 역외보조금 법안은 국내법적 보조금 규제이지만 향후 다자적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규제하는 방식의 하나로 논의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² 미국은 2020년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대상을 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로 확대하여 해당 분야의 M&A를 제한하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도입 운영하고 있음.

³ 2021년 2월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Trade Policy Review – 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와 부속서(Annex) 참조

연설문

미국의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 (Worker-Centered Trade Policy)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통상정책을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Worker-Centered Trade Policy)으로 요약하고 있다.¹ 2021년 6월 10일 USTR 수장인 Katherine Tai는 AFL-CIO(미국노동총연맹)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대한 연설을 진행하였다. 동 연설은 그 동안 다소 모호했던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아래에서는 해당 연설 중 직접적으로 통상정책을 언급한 부분을 발췌번역하여 소개하고자 한다.²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거래에 참여한다(everyone is cut in on the deal)"는 경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역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근로자 중심의 무역 정책을 추구함에 있어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교역이 세계 경제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무역이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역은 경제의 특정 분야에는 혜택을 가져다 주었으나, 너무나 많은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

¹ President Biden's 2021 Trade Agenda 참조

² 전문은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1/june/remarks-ambassador-katherine-tai-outlining-biden-harris-administrations-worker-centered-trade-policy> 참조

고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수입품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는 자유무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이 단순히 무역협정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의 조세정책은 근로자들보다 기업에게 더 유리했습니다. 부유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은 전혀 낙수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실제 임금이 정체되어 왔으며 특히 흑인과 백인의 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CEO들은 현재 직원보다 평균 320배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좋은 지표인 노조 노동자들의 비율은 40년 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공평은 공정하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금, 통상, 노동 및 우리를 ‘아래로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로 이끄는 다른 정책들로 인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무역정책을 포함하여, 기업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들에게 공동의 번영을 제공하는 경제 정책을 원합니다.

우리는 무역을 ‘위로 향한 경주(race to the top)’를 격려하는 좋은 힘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보다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역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만나 듣고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들을 테이블로 불러내어 경제적 안정과 인종과 성별에 대한 공평성을 강화하는 포용적인 무역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제되거나 간과되었던 여성, 유색인, 소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주 저는 상원의원인 Sherrod Brown를 비롯하여 오하이오에 있는 그의 일부 유권자들과 가상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선 순위와 그들의 사업과 도시에 도움이 될 무역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내에 이와 같은 대화를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 및 다국적 조직의 무역 정책에서 근로자 대표성(worker representation)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WTO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APEC과 OECD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이 점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이 직장의 테이블에 앉으면 임금과 퇴직금이 올라가고, 직장은 더 안전해지며, 차별과 괴롭힘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USMCA는 노동이 테이블에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Trumka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노조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했기 때문에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더 나은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USMCA는 이제 다음을 포함합니다.

- 가장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
-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특정 공장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신속 대응 메커니즘
- 일반인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한 중요한 변경.

USMCA는 이전의 무역 협정과 달리 압도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근로자, 노동 조합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경청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노동친화적이고 보다 의미 있으며 더 널리 사용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USMCA가 발효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이미 노동집행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우리는 멕시코 Silao의 GM 시설 근로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거부받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새로운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미국이 선제적으로 무역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집행 장치를 활용한 것도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AFL-CIO는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서 작업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신속대응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멕시코에 이 같은 주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전의 협정에서, 노동 탄원은 몇 년 동안 정부의 응답 없이 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는 중요합니다. 신속대응 메커니즘은 특히 착취에 취약한 저임금 산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근로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은 우리미국 내 근로자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전체에 걸쳐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역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Biden-Harris행정부의 우선순위입니다.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직면했을 때 정부는 여러분의 편일 것입니다.

우리는 WTO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무역은... 생활 수준을 높이고 완전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preamble)에도 불구하고, WTO규범은 어떠한 노동기준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후순위로 여겨집니다.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은 최근 WTO가 유해한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협정문 초안에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강제노동이 어업, 특히 원양어선에서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TO 회원국들이 우리의 상식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높은 수준의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이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WTO는 수산보조금 협상을 통해 국제통상체제가 일반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 학대에 관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WTO는 현대화되고 다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상 기능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 과정을 혁신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iden-Harris행정부는 WTO에 노동의 품격(dignity of work)과 근로자에 대한 권한 부여(empowerment of workers)를 실현할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총장인 Ngozi Okonjo-Iweala 박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지도력과 함께, 그리고 만약 WTO 회원들이 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다면 WTO 전문(preamble)의 약속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WTO에서 이 문제를 협상하든, 아니면 다른 무대에서 협상을 하든,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하면 더 성공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무역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 경제와 미국 중산층 재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친구, 무역 파트너, 그리고 민주주의, 노동권 및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다자기관들과 다시 교류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요한 목표였던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우려로 인해 통상논의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못하였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종종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과 무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동맹국들과 함께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드는 공동 의제를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G7 및 G20 국가들과 함께 전세계 최저 세금에 대한 합의를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달, G7 무역장관들은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위험을 완화하는 등 강제 노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역사적인 약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급망을 덜 취약하고 더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공급업체를 다양화시키고, 지리적 집중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은 기업과 자본이 임금, 세금 및 규제가 낮은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불가피한 결과로 보고 있었습니다. 유행병이 이러한 민낯을 드러내었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상집행(trade enforcement)에서도 동맹국인 민주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에 해를 끼친 독재적이고 비시장 경제의 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근로자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레버리지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대통령의 공급망 회복 노력의 일환으로 Trade Task Force를 이끄는 이유입니다. 즉, 중요한 공급망을 손상시키고 있는 불공정한 외국 무역 관행에 대해 일방적, 다자적 강제 조치를 제안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브뤼셀에서 대통령과 유럽의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16년 된 보잉/에어버스사의 분쟁을 해결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당 산업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경쟁 능력을 저해하는 중국 및 기타 국가의 유해한 산업 정책을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중심의 통상 정책은 미국 근로자와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무역 상대국과의 경쟁을 통해 초래된 피해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자 학대에 대항하고, 당당하게 노동과 함께 번영을 나누는 권리들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노조설립권과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USTR은 모든 종류의 무역 도구를 활용하고, 우리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강제노동의 제거와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인 강제 아동 노동을 포함한 노동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착취로 이익을 보는 비즈니스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무역 파트너들이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근로자의 권리를 홍보, 보호 및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미국의 핵심 가치로서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국들과 함께, 우리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다른 나라들이 국제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테이블로 데려와 동맹국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시장 접근 기회를 파악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전 세계로 판매되고 미국 근로자와 지역 사회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Biden-Harris 행정부의 Build Back Better 약속 중 일부입니다.

근로자 중심의 통상정책은 미국내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확장을 통한 사업기회 확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규모의 미국 회사들이 이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아이디어, 경험, 에너지, 그리고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2분기 주요 통상뉴스

(2021.04.01. – 2021.06.30.)

ITC, LG-SK 배터리 분쟁 종료(4.11.)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 합의하였다. 올해 2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SK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 10년간 배터리 부품 수입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동 결정을 두고 SK는 미국 조지아 공장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ITC의 결정은 60일간 대통령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USTR이 해당 결정을 검토하게 된다.

LG와 SK는 거부권 행사결정 발표 하루 전에 2조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모든 분쟁을 철회하고 향후 10년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보급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LG-SK 배터리 분쟁 종료는 전기자동차 산업과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하였다.

Key word #국제무역위원회 #전기차 #배터리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진행 (4.14./06.10.)

2021년 6월 기준, 총 63개의 WTO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 국내규제(Service Domestic Regulation) 협상이 진행 중이다. 동 협상은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서비스 무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 및 절차에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의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관련 국내규제 조치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협상은 지난 12월 통합협정문에 근접한 협상문 초안을 공개하였고, 관련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RCEP와 같이 최근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에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WTO 회원국들이 국내적 차원에서 국내규제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유하였다.

Key word #서비스 무역 #국내규제 #자격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04.29.), 통상장관 회의(05.28.)/G7 정상회의 개최(06.11.-13.)

G7 통상장관들은 연내 디지털 통상에 대한 고위급 원칙(high-level principle)을 개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G7 디지털, 기술장관 회의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지적권 및 안보와 관련된 도전과제들을 다루기로 약속하였다. 5월에 발표된 통상장관 코뮌iqué(communiqué)에서는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면서 국제통상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시장 왜곡적 정책 및 관행, WTO 분쟁해결 개선, 강제노동, 무역과 환경 등 12개의 세부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6월 진행된 G7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행동이 요구되는 6개의 아젠다-팬데믹 종식과 미래준비, 경제에 새로운 활력 제고, 미래번영 수호, 지구 보호, 파트너십 강화, 공통의 가치 수호-를 발표하였다. 특히 미래번영 수호와 관련하여 무역시스템을 더 자유롭고 공평하게 개혁해나갈 것을 확인하고 있다.

Key word #G7 #디지털 통상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 #WTO 개혁

WTO 일반 이사회, 백신의 공평한 접근 강조, 미국 TRIPS 면제논의 참여발표(05.05.)/EU, 백신 접근을 위한 대안제시(06.22.)

2020년 10월 남아공과 인도는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하여 WTO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일부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서는 저작권 및 인접저작권, 산업디자인, 특허, 미공개정보의 보호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의무의 면제를 언급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를 통해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한 적시 접근이 가능해지고 필수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조와 공급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부 국가들은 면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5월 5일 진행된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WTO 사무국장은 TRIPS 위원회에서 논의된 제안서의 수정본이 6월초 이루어진 TRIPS 위원회에서 논의된다는 점을 환영하였다. 나아가 USTR도 WTO에서 진행 중인 지적권 면제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만 면제범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TRIPS 면제 논의보다는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으로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적절하고 가능한 제조시설에서 전세계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 실시권(compulsory licenses) 발급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TRIPS #특허 #코로나19 #백신 #강제실시권

EU, 역외 보조금 규제법안 발표 (05.05.)

유럽위원회가 EU역내 영향을 주는 역외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은 EU역내에서 경쟁왜곡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EU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중 보조금을 공여받은 기업을 규제하는 장치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EU내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고 보조금 규모가 최근 3년간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과 M&A 진행시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 가액이 250백만 유로 이상인 경우, 입찰 참여기업은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내역을 계약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경쟁왜곡이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직권조사(ex officio)를 실시할 수 있다.

동 법안은 6월 중순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EU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해당 절차는 대략 2~3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Key word] #보조금 #EU #M&A #조달 #직권조사

WTO 수산보조금 협상문 초안 공개 (05.11.)/ 미국, WTO 수산보조금협정에 강제노동 제동장치 포함제안 (05.26.)

WTO 수산보조금 의장인 Santiafo Wills는 총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통합협상문을 공개하였다. 수산보조금은 5월 5일에 이루어진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언급되었고, WTO 사무총장도 동 협상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바 있다. 동 협상은 7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미국은 공개된 통합협상문에 강제노동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서는 제3조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지급되는 보조금 금지(prohibition on subsidies to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규정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언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ey word] #수산보조금 #IUU #어업 #강제노동

USMCA 첫번째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05.17. - 05.18.)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US-Mexico-Canada Agreement)의 첫번째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ssion)가 미국의 주최로 5월 17일에서 18일까지 진행되었다. 동 위원회는 USMCA 발효 후 이루어진 회원국간의 협력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USMCA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강력하고 포용적인 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근로자 및 소외된 커뮤니티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며, 정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첫번째 USMCA SME Dialogue를 10월에 개최할 것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통상시스템을 촉진해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통상은 환경적 우려를 제기하기 위한 정당하고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당사국들을 관련 법의 집행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Key word #USMCA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 #중소기업 #노동 #환경

미국, 디지털세 관련 제301조 조사 유예 발표 (06.02.)

미국은 호주,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이 도입/적용하고 있는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제301조 조사 최종판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할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자국의 디지털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국가들의 조치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으로 규정하며 제301조 조사를 진행해왔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청회 등 제301조 조사절차가 진행, 완료되었지만, 이번 발표로 180일 동안 제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관세를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USTR은 OECD와 G20에서 다자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협상을 진행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현재로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Key word #제301조 #디지털세 #OECD

영국, CPTPP 가입절차 착수/WTO 지역무역위원회 CPTPP 검토 (06.02./06.21.)

11개의 CPTPP 회원국들은 공식적으로 영국이 CPTPP 가입검토 절차에 착수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영국이 지난 2월 가입을 신청한지 4개월만이다. CPTPP 가입규정은 APEC 회원국이 아닌 국가 등의 경우,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절차 함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외에도 필리핀이 비공식적으로 CPTPP 참여를 문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WTO 100번째 지역무역협정 위원회에서는 CPTPP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CPTPP는 WTO 보다 서비스 무역을 광범위하게 개방하였으며,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국영기업,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및 중소기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냈다. 뉴질랜드와 일본은 CPTPP가 다자통상 어젠다를 다양화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Key word #CPTPP #영국 #지역무역협정위원회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06.04.-06.05.)

APEC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는 2021년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동 성명서는 3가지 이슈-코로나 공동 대응, 규칙기반 다자통상시스템 지지, 미래 번영구축-를 언급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 공동대응을 위해 코로나 19 백신의 생산과 분배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수출제한을 자제하고, 필수 상품의 이동을 위한 통관 및 운송 서비스 촉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자통상시스템과 관련해서는 WTO에서 팬데믹 대응을 위해 논의 중인 지재권 면제 논의와 통상과 보건 이슈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WTO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혁작업의 중요성과 협상의 장으로써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무역과 환경 정책이 상호보완적이며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적 도전과제가 통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포용적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여성, 토착민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APEC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다.

미래 번영구축에서는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 작업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WTO 무역원활화협정에 포함된 디지털 원활화 조치를 가속화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APEC 지역의 통합을 높힐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인 FTAAP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

Key word #APEC #코로나 #다자통상시스템 #디지털경제

미국, 공급사슬 100일 조사 보고서 발간 (06.08.)

백악관은 지난 2월 착수한 미국의 4개 필수상품의 공급사슬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코로나 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조사대상 상품의 국내적, 국외적 공급망에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적인 대응과 더불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 및 혁신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제조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며, 미국산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아케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불공평한 무역관행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 USTR 에 trade strike force를 설립하고 통상협정을 활용하여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처 다양화를 도모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미 상무부를 중심으로 농업부, 교통부가 참여하는 공급망 TF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발표하였다.

Key word #필수상품 #공급사슬 #Buy American #무역 기동타격대 #공급망TF

미국-EU 대서양 파트너십 복원 (06.15.)

미국과 EU 정상간의 대서양 파트너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EU간 약 16년동안 이어진 항공기 보조금 관련 분쟁에 대한 양국간의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향후 5년간 양국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과 관련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나아가 민간 대형항공기의 생산 및 개발에 관한 자금조달은 시장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EU와 미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 19 종식과 글로벌 보건 대응, 지구보호 및 친환경적 성장 촉진,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 그리고 보다 민주적, 평화적 안전한 세계 구축이라는 4가지 어젠다가 다루어졌으며, 새롭게 대서양 무역 기술 위원회(Transatlanti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가 새롭게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반도체, 기술 표준설정 및 사이버보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Key word #미국 #EU #항공기 보조금 #대서양무역기술위원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

세종 국제통상법센터는 빠르고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통상질서에 시의성있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유) 세종의 부속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법무법인(유)세종이 쌓아온 통상역량을 결집하여, 통상, 투자,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이슈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종의 고객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구성원

센 터 장 김두식 (대표변호사)

고 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주일대사) | 백주현 (전 주카자흐스탄 대사, 주러시아 경제참사관) |

김준동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김도열 (전 인천세관장, 인천공항세관장)

국제통상 전재민 (변호사) | 윤영원 (변호사) | 김재희 (변호사) | 이상협 (변호사) | 오미연 (캐나다, 미국변호사) | 박경진 (박사, 전문위원)

무역구제 강정수 (공인회계사) | 조명성 (공인회계사) | 오유창 (미국회계사) | 장슬기 (미국회계사) | 장유림 (영국회계사)

관 세 우도훈 (변호사) | 한정화 (관세사) | 정진용 (관세사)

연 락 처 02-316-4114 www.shinkim.com